

2024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

● 학적변동 신청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신청 화면

- 1 위 메뉴 접속 후 [추가] 버튼 클릭
- 2 학적변동 상세정보에서 신청하려는 학적변동 선택
- 3 [신청] 버튼 클릭하여 제출
- 4 학적변동신청목록에서 신청한 내역이 정상 등록되었는지 확인

1. 학적 반영(신청 승인)

가. 학적변동 신청 후 즉시 반영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내용 심사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나. 증빙서류 미비 등에 따라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이후에는 반드시 승인 여부 확인

- 현재 학적 확인: EDWARD시스템 > 학적기본관리 > 학적상태 확인

2. 학적반영 후 취소 신청

○ EDWARD시스템에서 취소가 불가하므로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교직원으로 방문 제출

3. 신청 관련 상세 안내

가. 안내: 계명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 홈페이지
나. 각종 서식: 학사홈페이지 > 학사자료실(서식자료실)

● 휴학 신청 기간

2024. 7. 11. (목) ~ 12. 16. (월) 15:00 까지 (상시 접수)

미등록 휴학 (복학 시 등록금 납부 필요)	등록 휴학		
	등록금 전액 대체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불필요)	등록금 반액 대체 (복학 시 등록금 반액 납부)	등록금 소멸 (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
7. 11.(목) ~ 9. 30.(월)까지	8. 23.(금) ~ 10. 10.(목)	10. 11.(금) ~ 28.(월)	10. 29.(화) ~ 12. 16.(월)

← 10. 1.(화)부터는 등록금 납부 후에만 휴학 가능 →

1. '등록 휴학 & 미등록 휴학' 이란?

가. 미등록 휴학 ~ 9. 30.까지 신청가능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으로, 복학 시 등록금 납부 필요
-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 휴학신청자는 모두 미등록 휴학처리 됨

나. 등록 휴학(등록금 대체) 등록금 납부 후 신청 가능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것으로,
최초 휴학을 신청한 날짜에 따라 복학 학기로 대체되는 금액이 상이함

- 전액 대체: 복학 신청하는 학기에 등록금 납부 절차 필요 없음(대치 등록)
- 반액 대체: 복학 신청하는 학기에 등록금의 반액 납부 필요(반액 등록)
- 등록금 소멸: 복학 신청하는 학기에 등록금 납부 필요(정규 등록)

※ 등록금 환불은 자퇴 또는 제적 시에만 가능

2. 휴학 시 장학금 수령 불가

휴학 상태에서는 장학금 수령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장학금 수령 후 신청할 것
(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장학금 수령을 위해 '재학' 상태 유지 필요)

가사 휴학

2024. 7. 11. (목) ~ 12. 16.(월) 15:00 까지 (상시 접수)

학교 방문없이 EDWARD시스템에서 신청

구분	가사 휴학	가사 휴학 연장
휴학 기간 (1회 신청 시)	2개 학기(1년)	2개 학기(1년) × 2회 연장 신청 가능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EDWARD 시스템
휴학 연한	최대 연장 시, 최대 6개 학기(3년) ※ 단, 가사휴학과 질병휴학을 통산하여 3년까지 사용 가능함	
비고	1학년 1학기(신입생) 신청 불가, 1학년 2학기부터 가사휴학 신청 가능	

1. 가사휴학 승인 확인

- [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는 가사휴학 신청 즉시 '승인'으로 표시되나, 실제 학적반영 여부는 [학적기본관리]의 학적상태에서 확인하여야 함

2. 반년(1개 학기) 휴학

- 가사휴학 신청 시 기본 1년 단위로 신청되므로, 반년(1개 학기) 휴학 사용 후 복학 신청 바람

3. 입대 휴학자 중 가사 휴학 연장 희망자

- 입대 휴학자는 제대 복학 승인 이후에 가사 휴학을 추가로 신청 가능함

● 입대 휴학

2024. 7. 11. (목) ~ 12. 16.(월) 15:00 까지 (상시 접수)

입대 2주전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EDWARD시스템에서 신청

구분	입대 휴학	부사관 등 군복무로 인한 입대 휴학 연장
휴학 기간	6개 학기(3년)	4개 학기(2년)
증빙 서류	입영통지서, 입영예정통지서 중 택 1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교무·교직원 방문 신청 (행서관 202호)
비고	1학년 1학기(신입생) 신청 가능	최초 신청한 입대휴학의 복학예정학기 이내에 연장 신청해야 함

1. 학기 도중 입대자 휴학 신청 방법

가. 학기 도중 입대자들의 경우, 귀향조치 문제 또는 군휴학 신청 반려 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사휴학을 먼저 신청 바람

- ① 입대 예정학기에 가사 휴학을 먼저 신청
- ② 가사휴학 상태에서, 입영일 2주 전에 '군휴학 연장' 신청

2. 입대 휴학 연한

가. 군복무로 인한 입대 휴학 기간은 가사휴학 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나. 같은 학기에 가사휴학 후 군휴학으로 연장 신청한 경우, 해당 학기는 군휴학으로 대체됨 (이 경우 가사휴학은 소진되지 않음)

3. 귀향 신고 ★

- 군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입영 후 신체검사 등에 의하여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교무교직원으로 방문하여 귀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대 휴학 시 등록금 및 성적 인정 기준

2024. 11. 16.(토) 이후 입대자는 해당학기 성적취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구분	11. 15. 이전	11. 16. 이후	
	신청자 전원	성적취득 미희망자	성적취득 희망자
성적 취득	불가	불가	취득
등록금	전액 대체	전액 대체	전액 소진
신청 방법	EDWARD시스템에서 군휴학 신청	EDWARD시스템에서 군휴학 신청	1. EDWARD시스템에서 군휴학 신청 시 "성적인정여부"에 체크하여 신청 2. '휴학신청서(군입대)'를 출력하여 현재 학기 수강중인 과목의 담당교수 서명을 모두 받아 교무교직팀에 방문 제출
비고	"성적인정여부" 체크하지 않고 신청	휴학신청서에 담당교수 서명이 없을 시, 해당 과목은 F처리되니 주의	

주의 사항

가. 입대휴학 신청 시 복학예정학기는 기본 3년(6개 학기)으로 표시됨
전역하였다면 복학예정학기 이전에 복학신청이 가능함

나. 입대휴학 증빙서류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은 승인 불가
그 외 본인의 인적사항과 입영일자가 전부 포함되지 않은 서류는 승인 불가

다. 반드시 군입대 2주 전에 휴학신청을 등록하고, 승인 결과를 확인한 후 입대할 것

- 휴학이 반려된 경우, 승인 상태에 [반려]로 표시되며,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이 필요함
- 입대 당일 휴학을 신청했다가 서류 미비로 군휴학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음
- 반려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을 시 등록금 소멸, 미등록제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라. 2024학년도 2학기 군휴학은 2학기 학사일정 내에 입대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 그 외 휴학

2024. 7. 11. (목) ~ 12. 16. (월) 15:00 까지 (상시 접수)

다음의 휴학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므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각 담당부서로 방문 신청

구분	질병 휴학	출산·육아 휴학	
휴학 기간	2개 학기(1년)	2개 학기(1년)	
증빙 서류	종합병원*의 진단서 (단, '1개월 이상 학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소견서 불가)	출산	출산진단서, 출산예정진단서 중 택1
		육아	주민등록등본
신청 방법	교무·교직원 방문 신청 (행소관202호)	교무·교직원 방문 신청 (행소관 202호)	
비고	복학 시에도 건강진단서 제출 필요 ※ 단, 가사휴학과 질병휴학을 통산하여 3년까지 사용 가능함		

구분	국가고시 휴학 (ex. 경찰, 소방공무원 등)	창업 휴학	
휴학 기간	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1회 신청 시	2개 학기(1년)
		최대 연장 시	4개 학기(2년)
증빙 서류	연수원 연수증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등	
신청 방법	교무·교직원 방문 신청 (행소관 202호)	창업교육센터로 문의 (053-580-6772)	
비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업종 ※ 상세는 공지사항 확인	

가. 종합병원* 조회: <https://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에서
병원 구분이 '종합병원' 이상인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승인 가능

나. 주의사항: 증빙 서류(형식, 내용 등)가 미비한 경우 휴학 승인 불가

● 복학 신청

2024학년도 2학기 개강 전, 방학 기간 동안 복학 신청 접수

구분	1차 복학 신청	2차 복학 신청	3차 복학 신청	2학기 개강
신청기간	7. 1. ~ 19.(금)	7. 29.(월) ~ 8. 2.(금)	8. 19.(월) ~ 30.(금)	2024. 9. 2.(월)
등록기간	8. 23.(금) ~ 28.(수)	8. 23.(금) ~ 28.(수)	9. 11.(수) ~ 13.(금)	

※ 신청한 차수에 따라 등록금 납부 기간이 상이하므로 위의 등록 기간을 반드시 확인

1. 복학생 수강신청



○ 휴학 상태에서도 수강꾸러미와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복학 예정이라면 기간에 맞추어 신청

2. 복학 후 등록금 납부

가. 복학 신청 차수(1~3차)에 따라 등록금 납부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위의 등록기간 확인

나. 등록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휴학 신청 일자에 따라 대체 비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금 대치여부와 등록금 고지서 확인

다. 대치여부 확인: EDWARD시스템 > 학적기본관리 > 학적변동 > 등록구분

- **대치등록**: 복학 신청하는 학기에 등록금 납부 절차 필요 없음(고지서 발급X, 자동 수납됨)
- **반액등록**: 복학 신청하는 학기에 등록금의 반액 납부 필요
- **정규등록**: 복학 신청하는 학기에 등록금의 전액 납부 필요

주의 사항

가. 미복학 제적 유의

-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복학기간을 엄수하여야 함
- 복학하지 않고 휴학 유지 희망자는 복학예정학기에 '휴학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복학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제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연장 신청' 바람)
- 복학예정학기 확인: EDWARD시스템 > 학적기본관리 > 학적변동 > 복학예정학기

나. 복학 신청 후 해당 학기의 등록금 납부를 마치면 인정학기(학년)가 올라감

● 복학 신청

휴학별로 복학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아래의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확인

신청 휴학	입대 휴학	질병 휴학	가사휴학 등 모든 휴학종류
증빙 서류	1. 다음 서류 중 택1하여 첨부 - 전역증 사본(앞뒷면 모두) - 주민등록초본(전역일 기재) - 병적증명서	1. 복학 신청서 2. 건강 진단서 (질병 완치 확인 가능한 내용)	제출 서류 없음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첨부파일 필수 등록)	교무·교직원 방문 신청 (행소관 202호)	EDWARD 시스템 (첨부파일 불요)

1. 입대 휴학 후 제대 복학

가. 본인의 복학예정학기 이내라면 전역 이후 복학 신청 가능

나. 가사휴학으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제대 복학 승인 후에 가사휴학을 추가로 신청하여야 함

다. 개강일 이후 전역하는 학생이 해당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무교직원으로 문의 바람

2. 제대 복학 신청 시 증빙 서류 ~~★~~ ~~★~~

○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복학 신청이 반려되므로 보완하여 재신청이 필요함

- 복학 신청 시 작성하는 인적사항, 입영일자, 전역일자는 증빙 서류 상의 정보와 동일하여야 함
- 증빙서류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메일 캡처 등은 승인 불가
- 종이/카드형 전역증은 앞뒷면 모두 업로드 (앞면만 올리는 등 일부만 업로드한 경우 승인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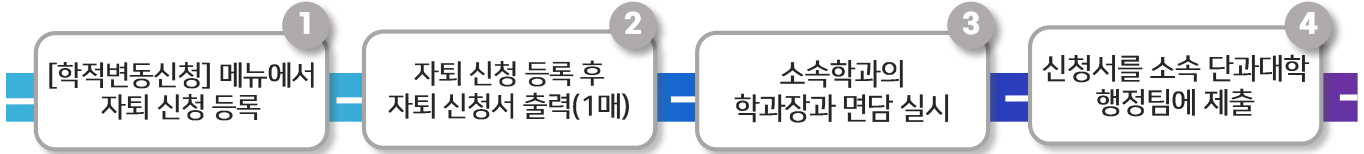
주의 사항

가. 서류 심사를 위해 복학 승인까지는 일주일가량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나. 복학 신청 이후에는 [\[학적기본관리\]](#) 메뉴에서 본인의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바뀌었는지 확인

● 자퇴 신청 안내

자퇴 신청 절차



1. 자퇴 면담

- 가. 소속 학과의 학과장 또는 단과대학장과 면담 진행 필요(지도교수 X)
- 나. 면담 시 EDWARD시스템의 [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자퇴신청서를 출력하여 지참
- 다. 면담 방법, 일정 조율 등은 **본인의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학과장 연구실**로 직접 문의 바람

2. 자퇴 승인 처리

- 가. 단과대학에 자퇴신청서 제출 후 교무교직팀에 서류가 도착하면 승인됨
(승인 시에는 자퇴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승인)
- 나. 등록금 반환신청은 자퇴 승인 이후 가능하며, 등록금 반환신청 후 통상 1~2주 가량 소요

자퇴 신청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비율(2024학년도 2학기 기준)

기준일자	등록금 전액 반환	등록금의 5/6 반환	등록금의 2/3 반환	등록금의 1/2 반환	등록금 소멸
신청일	8. 31.(토) 까지	9. 1.(일) ~ 9. 30.(월)	10. 1.(화) ~ 10. 30.(수)	10. 31.(목) ~ 11. 29.(금)	11. 30.(토) 이후

※ 휴학중 자퇴신청자의 경우 최초 휴학신청일이 기준일자가 됨

1.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

- 가.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 자퇴: 자퇴 신청일
- 나.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 최초 휴학 신청일

주의 사항

○ **등록금 환불규정과 휴·복학시의 등록금 대체 규정은 상이함에 유의 바람**

ex. 학기말 입대 휴학자가 제대 복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 대체 처리가 가능함.
그러나 복학하지 않고 휴학 도중 자퇴한다면 대체규정이 아닌 별도의 '자퇴 시 등록금 환불 규정'에 따라 등록금이 반환되며, 최초 휴학 신청 일자에 따라 등록금이 소멸될 수 있음